공고 제 9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1월 19일

파장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**	조** 1971-01-12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	거주불명등록이전 2023-01-19